



인도네시아 전자정보거래법에 대한 법적 고찰

- 정의 및 일반규정을 중심으로

A Legal Study on the Law of Electronic Information and Transactions in Indonesia – Focused on the Definitions and General Provisions –

저자 (Authors)	심종석 Chongseok Shim
출처 (Source)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10(4) , 2010.12, 114-131 (18 pages) The Journal of Internet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10(4) , 2010.12, 114-131 (18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Korea Internet Electronic Commerce Association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572090
APA Style	심종석 (2010). 인도네시아 전자정보거래법에 대한 법적 고찰.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10(4), 114-131.
이용정보 (Accessed)	대구대학교 203.207.31.89 2015/11/26 12:5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인도네시아 전자정보거래법에 대한 법적 고찰† - 정의 및 일반규정을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the Law of Electronic Information and Transactions in
Indonesia

- Focused on the Definitions and General Provisions -

심 종 석*

Chongseok Shim

... Abstract ...

This legal study is to compare the Law of Electronic Information and Transactions in Indonesia(hereinafter 'LEIT') with other countries' electronic transactions acts mainly. Comparative legal acts are MLEC, UECIC, UETA, UCITA and Korea' Electronic Transactions Act. The LEIT consists of 13 chapters included preamble and definitions. Each chapter's main point as follows. The Chapters are not only general provisions, principles, objectives and electronic information, but records and signature, provisions of electronic certification and electronic systems, electronic transactions, domain name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protection of privacy rights, prohibited acts, dispute resolution, role of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investigation, penal provisions, transitional provisions, and finally concluding provisions and so on.

Key Words : LEIT, MLEC, UECIC, UETA, UCITA, Korea Electronic Transactions Act

논문 접수일 : 2010년 11월 22일, 1차 수정일 : 2010년 12월 21일, 게재 확정일 : 2010년 12월 23일

† 본 논문은 2010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조교수

I. 서 론

인도네시아는 총인구 5억의 ‘아세안 자유 무역지대’ (ASEAN Free Trade Area : AFTA)의 주도국으로서 역내 회원국을 비롯하여 미국·EU·한국·대만 등 무역 및 투자 관련 대외거래분야에서 적극적인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중진 개도국의 지위를 점한다.

주지하듯 인도네시아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직면하여 실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연쇄적으로 정치·사회구조도 회복불능의 지경에까지 이르러, 당시 향후 국가경제회복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점쳐지기도 했지만, 풍부한 부존자원과 노동력이라는 기반 인프라를 바탕으로 2000년 이후 본 궤도 정상진입에 성공하여 현재까지 줄곧 연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견인하고 있다. 지표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도 불구하고 6%대 성장률을 기록하였음과 동시에 2010년 실물경제 예상지표에서도 6% 중후반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음은 이를 증한다.

나아가 인도네시아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투자승인 건수만 1,000건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2010년 3/4분기까지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금이 130억 달러를 초과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절반인 1억2,000만명이 29세 이하의 청년층으로 구성되어 있음과 동시에, 풍부한 자원과 노동경제력의 비교우위에 기하여 잠재적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2억이 넘는 세계 4위의 인구와 그에 뒷받침된 거대한 국내시장의 존재는 당해 평가의 실질적 핵심동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요컨대 인도네시아 경제규모는 2016년 한국, 2024년 일본, 2031년 영국, 2041년에는 독일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과 동시에, 실질경제성장률이 2011년 이후 6~7%로 가속되어 BRICs에 필적할 것이라는 경제지표가 꾸준히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mar Dagang dan Industri : KADIN)의 ‘인도네시아 국내 제조센터개발에 관한 로드맵’에 따르면 2015년까지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의 핵심기축은 식품, 섬유, 전기제품 및 부품소재, 수송기·자동차 등을 들고 있는데, 이들 중 산업구조가 가장 뛰어난 분야로서 통신·정보기기가 우선시 되고 있음은 특기할 사항이다. 일례로 이동통신 가입자가 전체 인구대비 62%에 달하고 있음은 당해 특기사항의 실질적 예표로 간주된다.*

본 고에서는 이와 같은 인도네시아의 국가정책적 산업부양의 추이를 주시함에 있어 현재 인도네시아 제1의 산업구조 분야로서 급속한 추진을 전개하고 있는 전자통신 및 기반인프라 구축에 관한 분야를 전 범위로, 특히 기초적 기반인프라로서 법제적 차원에서 입법성과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곧 인도네시아는 전자정보통신에 관한 국가차원에서의 기반인프라 구축이 상대적으로 선진국 대비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AFTA 중 최대의 경제규모를 보유한 주도국의 지위로서 당해 분야에 대한 법제도적 차원에서의 순기능적 환경개선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과 동시에, 이로 부터 상당한 소기의 입법성과가 개진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바, 당해 특정분야를 예의 주

* KEIT, “주목받고 있는 인도네시아 최신 경제사정”, 「아시아·해외산업경제」, 2009. 12.

시험에 있어 인도네시아의 현행 전자정보거래에 관한 기축법제로서 그 지위를 담보하고 있는 이른 바 ‘전자정보거래법’ (The Law of Electronic Information & Transactions : 이하 ‘LEIT’)을 중심으로 동 법의 법적 의의 및 특징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부터 본 고에서 도출하고자 하는 결론 및/또는 시사점은, 첫째 인도네시아 LEIT를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분석고찰함으로써 우리 관련 법제상 문제점 내지 개선점을 도출하고, 둘째 LEIT 및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상 입법적 열우위를 추론하여 그 시사점을 부각함과 동시에, 셋째 이로부터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제작상무적 관계개선 및 양자 간 합목적성 도모에 적의 참조할 수 있는 단초제공 등이다.

이를 위해 본 고는 비교법적 연구방법을 통해 위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바, 이를 위해 취한 비교법적 분석도구는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 을 포함 국제무역법위원회 (UNCITRAL)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적 의사표시 이용에 관한 UN협약’ (UN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 이하 ‘UECIC’ ***), ‘전자상거래 모델

법’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 이하 ‘MLEC’ ***), 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 이하 ‘UETA’ ****),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 이하 ‘UCITA’ *****) 등이다.*

의사표시의 이용이 국제상거래의 효율성 증대 및 무역연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종전 격지시간 계약당사자와 시장에 새로운 접근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전제하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적 의사표시 이용 있는 전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부터 야기되는 문제점이 국제무역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음을 고려, 현재 제반 국제통일법규범의 적용으로부터 기인하는 장애를 비롯한 국제계약상 전자적 의사표시 이용에 따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성안되었음을 천명하고 있다. 결과적는 중UECIC는 국제상거래에 임한 계약당사자 중하여금 국제계약 있는 전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는 전기반으로서 아울러 ‘기술중립성’ (technological neutrality), ‘기능 전등가성’ (functional equivalence)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에게 국제사법상 법률의 목적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매체와 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실익을 담보하고 있다. 나아가 UECIC는 상이한 법률·사회·경제제도를 가진 당사국이 적의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전자적 의사표시 이용의 법률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일반적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입법적 함의를 새길 수 있다. UECIC에 대한 상세는 심종석,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관한 UN 협약의 평가와 실무적용상 유의점에 관한 고찰”, 『e-비즈니스연구』 제9권 제4호, 국제e-비즈니스학회, 2008. 11.

** 「www.uncitral.org/pdf/english/texts/electcom/06-57452_Ebook.pdf」 전문 참조. (이하 본 고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반 웹사이트는 본 고 제출시점 현재까지 웹상에 현시되고 있음을 참조한다.)

*** 「www.uncitral.org/pdf/english/texts/electcom/05-89450_Ebook.pdf」 전문 참조.

www.law.upenn.edu/bll/archives/ulc/ecom/ueta_final.pdf」 전문 참조.

* 여기서 본 고의 비교법적 분석도구로서 제반 법규범의 소개 및 의의는 그간 각양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그 결과가 상당히 집적되어 있음에 따라 이를 생략하고, 다만 최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CISG) 등의 부속협약으로서 그 법적 의의를 부각하고 있는 UECIC에 대하여 개략하면 다음과 같다. UECIC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UNCITRAL의 제반 모델법이 법적 구속력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과 국제상거래에 있어 전자계약의 체결 시 CISG를 적용할 경우 법적 장애 및 보충의 여지가 예견되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에 따라 성안되었다. 요컨대 UNCITRAL에 의해 성안된 UECIC는 증가하고 있는 전자적

이상의 법규범을 본 고의 분석도구로 취한 이유는 주지하듯 개별 법규범이 국제상거래에 있어 선도적 입법례로서 그 위상을 제고하고 있음과 동시에, 각국 관련 입법 시에 참조할 수 있는 모범법(model law) 내지 입법표준(general principles)으로서 국제적으로 상당한 파급효를 개진하였거나 개진하고 있다는 성과에 기인한다.

II. 인도네시아전자정보거래법의 제정취지와 구성체계

1. 제정취지

인도네시아의 LEIT는 공식명칭을 ‘전자정보거래법’ (The Law of Electronic Information & Transactions)으로 두고 있다. 연혁에 비추어 LEIT는 여타 선진국에는 물론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 등 AFTA

「www.nccusl.org/nccusl/ucita/UCITA_Summary.pdf」 전문 참조.

* 비교법적 분석도구로서 제반 법규범에 대한 해제 및 규정내용의 비교는 심종석, 「전자상거래 법률과 제도」, 청림출판, 2001.을 참조.

* 싱가폴은 1997 개정된 증거법(Evidence Act)에 따라 전자기록(electronic record)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1998년 전자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 Act)을 제정하여 전자계약의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컴퓨터남용법(Computer Misuse Act)을 통해 중요한 컴퓨터 시스템을 법률적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상세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자상거래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분야별 정책연구」, 2000. 165-166면.

** 말레이시아의 관련 입법은 전자서명법(1997), 컴퓨터범죄법(1997), 저작권법(1997), 원격의료법(1997), 통신및멀티미디어법 (1998) 등이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2004년 정보통신기술의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와 규제책 마련을 위해

회원국에 비하여 다소 늦은 2008년에서야 비로소 입법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법은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나 정의된 제반 용어의 시의성이 매우 포괄적이고도 신축적이어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각국 유관 법률의 제·개정 시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테면 포괄적 측면에서 LEIT는 전자정보거래에 관한 규정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을 비롯하여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개인정보보호(protection of privacy rights), 분쟁해결(dispute resolution), 정부-공공기관의 역할(role of the government and role of the public), 조사(investigation), 벌칙규정(penal provisions), 유예규정(transitional provisions) 등을 망라한 종합적 옴니버스(omnibus)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신축적 측면에서는 전문(preamble)의 ‘전자적 시스템’ (electronic systems)에 대한 확장가능성 내지 적용범위 및 포괄대상을 여타 법규범에 비하여 일응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바, 이는 시의적으로 급진전하고 있는 IT 기반 기술분야의 특성을 적의 고려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 같은 법리상 내재적 특성은 전자적 시스템에 대한 운영범위 및 그 적용대상이 작간 점적으로 확장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 후술하는 바와 같이 LEIT는 전자정보거래에 관련한 송수신 범위를 여타 앞선 법률에서와 같이 통상적으로 네트워크(network) 또는 정보처리시스템(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자체 및 상호 간에 국

전자정부법, 전자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제정·발효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하지 아니하고, 이를 클러스터(cluster) 및 /또는 클러스터 간으로 확장하여 현재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적 안정성 내지 시의성을 담보하고도 있다.

모름지기 LEIT는 전문의 명시적인 선언을 통해 전자정보거래의 촉진이 인도네시아 국가무역과 경제성장에 지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전자정보와 당해 거래의 적정규제를 통해 정보기술의 개발·유통·촉진 및 오용방지에 동법의 제정취지를 두고 있다.*

이에 덧붙여 LEIT는 전술한 바와 같이 법리적 구성체계가 매우 포괄적이고도 신축적임에 반하여, 한편으로 이에 상당한 하위법령 및/또는 유관 법령의 제·개정¹이 긴요하고도 절실한 상황인데, 이는 인도네시아의 IT 관련 제반 인프라의 확충 여부에 따라 점진적으로 보완·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구성체계

LEIT는 전문[general elucidation]을 위시하여 총 제13개장 제54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이할 것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그 내용이 전자거래·전자서명·분쟁해결·조사 등 전자정보거래의 전 범위를 포괄적으로 망라하여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본 고 비교법적 분석도구로서 MLEC 및 여타 선진 법률들을 대체적으로 가감없이 계수한 결과로도 간주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하위 법령에 대한 입법위계 의도를 고려할 때 향후 그 추이가 주목된다. LEIT의 구성체계를 도해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 LEIT, Preamble, (a)-(f).

** 이하 본 고에서는 LEIT 구성체계에 기하여 전

<표 1> LEIT의 구성체계

조문	장별 구성
1-2	제1장 : 일반규정(General Provisions)
3-4	제2장 : 적용범위와 목적 (Principles & Objectives)
5-12	제3장 : 전자정보, 기록, 서명 (Electronic Information, Records, Signature)
13-16	제4장 전자인증과 전자적 시스템 (Provisions of Electronic Certification & Electronic Systems)
17-22	제5장 : 전자거래(Electronic Transactions)
23-26	제6장 : 도메인네임, 지적재산권, 개인정보보호 (Domain Nam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protection of Privacy Rights)
27-37	제7장 : 금지법령(Prohibited Acts)
38-39	제8장 : 분쟁해결(Dispute Resolution)
40-41	제9장 : 정부·공공기관의 역할 (Role of the Government & the Public)
42-44	제10장 : 조사(Investigation)
45-52	제11장 : 벌칙규정(Penal Provisions)
53	제12장 : 유예규정(Transitional Provisions)
54	제13장 : 최종규정(Concluding Provisions)

LEIT 구성체계에 있어 외견상 주목할 수 있는 사항은, 첫째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에 관련한 규정내용을 예컨대 전자서명법 등과 같은 별단의 법률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이를 합체하여 다루고 있다는 점과, 둘째 전자상거래에 있어 별도의 범규범으로 입법이 상례화 된 개인정보보호 및 지적재산권 그리고 도메인 네임 등에 대한 규정내용 또한 포괄하여 동 법에서 아우르고 있다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자서명을 제외하고, 전문을 포함 제1장(General Provisions), 제2장(Principles & Objectives), 제3장(Electronic Information, Records) 및 제5장(Electronic Transactions)의 주요 규정을 연구범위로 두고자 한다. 그 배경은 비교법적 분석도구로 취한 제반 범규범과 적용범위 내지 형평성을 고려한 결과이다.

Ⅲ. 인도네시아 전자정보거래법의 평가

1. 주요 골자

제1장(General Provisions)을 포함하여 전문(preamble)에 부속된 축조해설[general elucidation]에 있어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보다도 ‘전자적 시스템’ (electronic systems)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내용은 크게 전자적 시스템에 대한 기능성과 확장가능성을 표방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는 제1장 제1조 정의규정에 의해 보충된다.

곧 당해 축조해설은 시의적으로 급진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추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의도로 파악되는데, 이는 향후 LEIT의 법적 경화현상(hardship)으로부터 동 법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당해 취지의 근거는 정보기술, 미디어 및 ‘전자적 의사표시’ (communications) 등의 글로벌화가 현재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공공 부문 및 개인의 복지증진에 일대 변혁을 추구할 것임과 경제문화사회 전 분야의 순기능적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하는 전문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다.

한편 제1장 제1조 정의규정에서는 이 같은 기능성과 확장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타 유관 법규범에 비할 경우 개별 용어에 대한 정의내용을 매우 상세하고도 보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전자문서(data messages*)를 정보처리시스템

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 규정하고,** 이 경우 정보처리시스템을 전자문서의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을 위해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동 법의 원시법[model law]이라고 할 수 있는 MLEC을 포함하여 기타 유관 법규범에서도 그 내용은 다르지 않다.****

이에 반하여 LEIT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전자문서(electronic record)를 작성(created), 전달(forwarded), 송수신(sent, received)된 전자정보(electronic information)로서 문서(writings), 음성(sounds), 이미지(images), 지도(maps), 도면(drafts), 사진(photographs), 서면(letter), 표식(signs), 도안(figures), 표상(symbols) 접속코드(access codes) 등에 제한을 두지 않

* 본 고에서는 MLEC, UECIC 등 제반 법규범에서 정의된 데이터 메시지(data messages)가 국내 실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 전자문서의 의미와 상통하고 당해 규정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종이문서와의 상호 대비에 따른 실익을 고려하여 이하 ‘전자문서’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제반 국제기구 및 각국 간 실정법에 의해 정의된 전자문서에 대한 정의는 다음 법규범을 참고할 수 있다. ‘OECD Guidelines for Cryptography Policy (1997)’, Chap. III., ‘ICC Supplement to UCP 500 for Electronic Presentation (eUCP)’, Art. e3., ‘CMI Rules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 (1990)’, Art. 11., UETA, Sec. 2, (7), (13)., UCITA, Sec. 102, (28), (54)., E-Sign, Sec. 106, (4)., UECA, Article 1, (a)., 日本 ‘電子署名及び認証業務に關する法’, 第2條., 말레이시아 ‘Digital Signature Bill (1997)’, Art. 2.

**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

***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2호.

**** MLEC, Art. 2, (a), (f)., UECIC, Art. 4, (c), (f)., UETA, Sec. (7), (11)., UCITA, Sec. 102, (28), (36).

고 디지털(digital), 아날로그(analogue), 전자기적(electromagnetic), 광학적(optical) 형태로 저장된(stored) 화면표시(displayable), 현시(visible), 가청(audible) 가능한 전자정보(electronic information)로 정의하고 있다.*

다른 한편 LEIT의 배타적 정의규정으로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전자시스템의 일반원칙(provision of electronic system), 전자적 시스템망(electronic system network), 컴퓨터(computer), 접속코드(access codes), 전자계약(electronic contract) 등이다. 이 경우 전자계약에 관한 정의규정은 돋보이는 입법규정으로 간주되는 바 그 내용은 후술한다.**

아울러 제2조는 LEIT 적용범위 및 주체를 명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동 법에 적용에 규율될 수 있는 자격 있는 당사자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법 적용상 범위에 따른 제한요건은 재판적이 인도네시아의 관련 법령에 따라 공히 행사될 수 있는 범위로 특정하고 있다.

제2장(Principles and Objectives)은 LEIT

의 해석원칙 및 일반원칙으로서 전자문서의 ‘기술중립성’(technology neutrality)에 기한 ‘신의칙’(good faith), ‘전자거래에 관한 관습’(electronic transaction usage), ‘법적 안정성’(legal certainty) 등에 대한 일반원칙을 표창하고 있다.

제3장(Electronic Information, Records, Signature)은 전자적 정보,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법적 구속력 및 자격있는 당사자의 권한 내지 의무귀속을 주된 내용으로 두고 있는데, 당해 조문내용은 앞선 축조해설과 정의규정에 대한 보충적 해석규정으로 같을 수 있다. 다만 전 조문의 기저에는 전통적 종이문서에 대한 전자문서의 기능적 동가성(functional equivalent)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는 여타 법규범과 마찬가지로 MLEC의 법리를 계수한 결과로 간주된다.

제5장(Electronic Transactions)은 전자거래에 관한 일반규정으로서 주요 골자는 전자거래를 공공 및 개인부문으로 구분하여 이를 각기 다른 법 적용하에 예측해 두고 있다. 특히 전자계약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표창하여 자격있는 계약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담보하고 이에 상당한 법적 구속력의 행사를 보장하고 있음은 여타 법규범에 비하여 순기능적 차원에서 진일보한 입법규정이라고 판단된다.

2. 평가

1) 전자계약(electronic contract)

LEIT에서는 본 고에서 분석도구로 취한 여타 법규범에서와는 달리 전자계약(electronic contract)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존치해 두고 있는데, 이는 여타 법규범에서

* LEIT, Art. 1, (4) ; “Electronic record means any electronic information that is created, forwarded, sent, received, or stored in analog, digital, electromagnetic, optical form, or the like, visible, displayable and/or audible via computers or electronic system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writings, sounds, images, maps, drafts, photographs or the like, letters, signs, figures, access codes, symbols or perforations having certain meaning or definition or understandable to persons qualified to understand them.”

** 다만 이 경우 LEIT의 전자서명 내지 인증에 관한 정의규정은 제외한다.

는 찾아볼 수 없는 순기능적 차원에서의 선
도적 규정례로 판단된다.

곧, 동 법에서는 전자계약을 전자적 시스템(electronic systems)을 매개로 이용하고
자 한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정의하고 있는
데,* 이 경우 전자적 시스템은 전자적 장치
또는 절차를 망라하여 전자정보의 생성·수집·
처리·분석·저장·현상·고자·송신 및 유포 등을
총칭한다.** 이로부터 LEIT는 전자계약의 성
립요건 및 법률효과에 대한 전통적 종이문서
와 등기능성을 표창하여 전자계약이 ‘어떠한
구체화된 목적물’ (any specialized subject
matter) 또는 ‘형식적 합의의 수단’
(method for forming agreements)을 기
초로 한 부분이 아닌 다만 전자적 통신수단
또는 전자적 시스템에 의해 체결되거나 입증
될 수 있는 것으로 그 개념 및 적용범위를
확립해 두고 있어 이 같은 취지에서*** 선언
적 효력이나 당해 용어의 정의에 대한 순
기능적 차원에서의 법적 의의가 돋보인다.

2) 전자적 시스템(electronic system)

LEIT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전자적 시스템
의 정의에 부수하여 이와 연관된 별단의 개
념에 대한 규정을 추보하고 있는데, 그 내용

은 ‘전자적 시스템에 대한 규정’ (provision
of electronic system)과 ‘전자적 시스템
네트워크’ (electronic system network)에
대한 정의이다. 당해 규정은 전자계약과 마찬가지로 LEIT의 배타적 정의규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전자는 공공 및 정부부문·소비자 기
업 등에 의해 형성된 ‘전자적 시스템상의
관습’ (electronic system usage)으로,**** 후
자는 복수 이상의 전자적 시스템에 연결된
‘폐쇄형 또는 개방형 통신망’ (closed or
open net-works)으로 명시하고 있다.*****

살피기에 국제상거래에 있어 인터넷을 통
한 상거래 활동은 일반적으로 상인 간 ‘폐
쇄형 통신망’ (closed networks)에 의한 활
동과, 주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개방
형 통신망’ (open networks)에 의한 활동으
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양자 모두 전자적 통
신수단에 기하여 당해 기여의 폭을 확장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같은 시각에서 LEIT에서 이상의 양 통신
망을 명정해 두고 있는 이유는 동 법의 시의
성을 담보하기 위한 의도로 파악되는데, 곧
LEIT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편승하여 가일층 진일보하고 있는 당
해 분야에의 관습 내지 통신수단의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로부터 예견가능한
일체의 법적 경화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의도
로 판단된다.

* LEIT, Art. 1, (17) ; “electronic contract means an agreement of parties entered into by means of electronic systems.”

** LEIT, Art. 1, (5) ; “electronic system means a set of electronic devices and procedures that functions to prepare, collect, process, analyze, store, display, announce, send, and/or disseminate electronic information.”

*** UN General Assembly A/CN.9/WG.IV/WP 95, para. 10.

**** LEIT, Art. 1, (6) ; “provision of electronic system means an electronic system usage by the state administrators, persons, business entities, and/or the public.”

***** LEIT, Art. 1, (7) ; “electronic system network means a closed or open connection of two electronic systems or more.”

다만 LEIT상의 ‘전자적 시스템’ (electronic system)은 여타 법규범에서 규정해 두고 있는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에 의제할 수 있는데, 이는 MLEC, UECIC와 그 처지를 같이 한다.*

그렇지만 당해 규정은 우리 전자거래기본법 및 미국 UETA, UCITA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보처리시스템’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과는 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자의 차이에 대하여 판단컨대, 개별 법규범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 ‘정보시스템’ 내지 ‘전자적 시스템’ 과 ‘정보처리시스템’ 은 공히 전자문서의 작성·송신·수신·저장 기타 그 밖의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용어의 정의 차원에서는 의견상 별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다만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상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이를테면 ‘전자적 장치와 체계’ 라고 하는 명료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어, 당해 개념에 대한 명확성 및 확장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여타 법규범에 비하여 순기능적 차원에서 진일보한 법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3) 전자적 대리인(electronic agent)

통상 ‘자동화된 메시지시스템’ (automated message system)에 의제되어 사용되고 있

는 ‘전자적 대리인’ (electronic agent)은 전자거래 추이에 비추어 점차 그 사용이 상례화 되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제반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전자적 대리인 내지 자동화된 메시지시스템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행위를 개시하거나 전자문서 또는 그 실행에 응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전자화 또는 그 밖의 자동화된 수단으로서 시스템에 의하여 행위가 개시되거나 응답이 생성될 때 자연인에 의한 검토나 개입이 없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요컨대 전자적 대리인 내지 자동화된 메시지시스템은 전자문서에 의한 국제상거래에 있어 매매계약 당사자의 기대이익을 포함하여 신원·자격·상거래 적격 등을 보장함과 동

*** UECIC, Art. 4, (g)., “automated message system means a computer program or an electronic or other automated means used to initiate an action or respond to data messages or performances in whole or in part, without review or intervention by a natural person each time an action is initiated or a response is generated by the system.” ; UECIC, Art. 12., “A contract formed by the interaction of an automated message system and a natural person, or by the interaction of automated message systems, shall not be denied validity or enforceability on the sole ground that no natural person reviewed or intervened in each of the individual actions carried out by the automated message systems or the resulting contract.” UECIC Art. 12는 계약 체결 시 자동화된 메시지시스템의 이용과 관련, 당해 시스템과 송·수신자간 상호작용 또는 자동화된 메시지시스템간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가 당해 시스템에 의한 각 단계나 성립될 계약에 대하여 검토하거나 간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 및 집행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앞선 자동화된 메시지시스템의 정의에 대한 근거규정으로 기능하고 있다.

* MLEC, Art. 2, (a)., UECIC, Art. 4, (f) ; “information system means a system for generating, sending, receiving, storing or otherwise processing data messages.” ,

** UETA, Sec. 2, (11)., UCITA, Sec. 102, (36) ;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means an electronic system for creating, generating, sending, receiving, storing, displaying, or processing information.”

시에 나아가 상거래 전반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는 매개로써의 그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적의 고려하여 제반 국내·외 법규범하에서는 전자적 대리인 내지 자동화된 메시지시스템에 대한 법률효과 및 요건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각국의 실정법 및 국제기구에 의한 법규범에서는 인증 또는 인증시스템, 참여주체 및 시스템 제공자, 전자적 대리인(electronic agent), 자동화된 거래(automated transactions) 등의 사안에 관한 책임귀속과 그 법적 효과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실무적 전자문서 인증시스템 구현 수준에 있어서도 당사자 자치 또는 약정 및 규약 등에 의해 동일한 효력을 부가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LEIT에서는 같은 시각에서 전자적 대리인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계약당사자에 의해 이용가능한 어떠한 전자정보가 자동화된 전자적 수단의 이용을 매개로 할 수 있는 일체의 수단으로 총칭하고 있다.***

LEIT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적 대리인은

* MELC, Art. 13, (2)., UECIC, Art. 4, (7)., UETA, Sec. 2, (6)., UCITA, Sec. 102, (27).,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2호, 제7조 제1호 등.

** 전자문서 인증시스템의 구현사례 및 법적 효력에 관한 상제는 심종석, “국제상거래에 있어 전자문서 인증시스템에 관한 법적 고찰”, 「경영법률」 제14집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4. 3.을 참조.

*** LEIT, Art. 1, (6) ; “electronic agent means an automated electronic means that is used to initiate an action to certain electronic information, which is operated by Persons.”

당해 규정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이를테면 전자인증 및 서명과 관련 전자인증 서비스제공자(electronic certification service provider), 전자적 시스템 네트워크(electronic system network), 전자계약(electronic contract) 등의 유관조항과 상호보완적 규정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은 적의 참조하여야 할 사항이다.

4) 전자문서(electronic record)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전자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 정보처리시스템을 전자문서의 작성·송신·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MLEC 및 UECIC에서는 ‘전자문서’(data message)를 전자·자기·광학적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작성·전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의미하며, 이는 전자데이터교환(EDI)·전자우편·전보·전신 또는 모사전송을 포함하나, 다만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동일한 의미로 합체하여 새겨두고 있다.****

**** MLEC, Art. 2, (a) ; “data message means information generated, sent, received or stored by electronic, optical or similar mea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 electronic mail, telegram, telex or telecopy.”, UECIC, Art. 4, (c) ; “data message means information generated, sent, received or stored by electronic, magnetic, optical or similar mea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electronic data interchange, electronic mail, telegram, telex or telecopy.”

이에 반하여 LEIT에서는 이상의 범규범에서의 ‘전자문서’ (data message)를 ‘전자문서’ (electronic record)에 의제하고 이에 덧붙여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전자정보’ (electronic information) 및 ‘컴퓨터’ (computer) 또는 ‘전자적 시스템’ (electronic systems)과 연계하여 당해 용어의 적용범위 내지 그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 경우 특이할 것은 ‘컴퓨터’ (computer)에 대한 용어에 대하여 그 의미를 별단의 규정으로 존치해 두고 있다는 것인데, 그 내용은 전자작자기적광학적 데이터 처리장치 또는 연산 내지 산식(arithmetic) 기능의 수행과 당해 연산산식 기능의 저장수단으로 일체화하고 있다. 이는 LEIT상에 정의되어 있는 전자문서(electronic record)의 보충규정으로서 기능한다.*

이상의 내용은 외견상 당해 용어를 개별적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하는 시각에서 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으나, 비교법적 분석도구로서 제반 범규범의 규정내용을 참고할 때, 당해 법적 기능 및 조문내용은 여하히 서로 다르지 않다.**

5) 전자거래(electronic transaction)

인도네시아의 LEIT는 그 범명(electronic information and transactions)에서 뿐만 아니라 정의규정(definitions) 및 제4장 전자거래(electronic transactions)에서도 ‘거래’를 ‘transactions’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동 법의 정의규정에 의해 보충되는 데, 그 내용은 컴퓨터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 및/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 (electronic media)의 사용에 의해 수행되는 일체의 법률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당해 규정은 외견상 MLEC 범명에서와 같이 ‘commerce’와 ‘상사적 활동’ (commercial activities)이라는 제1조 적용범위(sphere of application)에 연관되는 규정임과 동시에,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의 ‘전자거래’ [electronic transactions]에 대한 정의규정 및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전자상거래’ [electronic commerce]에 연관되는 규정이다.****

이 경우 MLEC는 동 조문의 해제에 있어

*** LEIT, Art. 1, (2) ; “electronic transaction means a legal act that is committed by the use of computers, computer networks, and/or other electronic media.

**** 이 경우 우리나라는 양 법 당해 조문에서 전자거래와 전자상거래를 동일한 의미로 의제하고 있다. 곧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항의 내용은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로 규정하고 있고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과 같다.

* LEIT, Art. 1, (6) ; “computer means an electronic, magnetic, optical data processing device, or a system that performs logic, arithmetic, and storage functions.

** UETA, Sec. 2, (5)., UCITA, Sec. 102, (26) ; “electronic means relating to technology having electrical, digital, magnetic, wireless, optical, electro-magnetic, or similar capabilities.”

소비자 보호를 배척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거래’ (commerce)로 표현하고 있음과 동시에* 그 적용범위를 ‘상사적 활동’에 국한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LEIT는 공공부문 및 소비자 거래에 관한 ‘민사적 활동’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상기한 우리나라 양 법을 비교할 경우 그 의미를 보다 분명히 특정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보다 진일보한 입법규정이라고 판단된다. 곧 LEIT는 민사적 활동에 대한 포괄적 수용을 명시적으로 표창하고 있음에 따라 동 법의 적용상 무엇보다도 ‘전자거래’ 또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적용범위 내지 개념상 명확한 구분을 명시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적 실익이 부각된다.

곧 LEIT는 그 범명에 비추어 명실공히 민사적 활동을 포함하고 있음에 따라 국내거래는 물론 그 적용대상을 상행위에 관한 상거래 활동에 있어서의 주체로서 상인뿐만 아니라 거래의 통념상 소비자에까지 그 지평을 확장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법적 의의를 부각할 수 있다.

결국 LEIT는 전자거래의 적용범위를 ‘민사적·상사적 활동’에까지 그 지평을 확대하고 있음과 동시에, 전자거래와 전자상거래를 명확히 구분하여 그 적용대상을 포괄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국제상거래 활동에 국한하고 있는 MLEC에 비하여 보다 확장된 시각을 견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 및 유관 법률에 비하여 그 대상을 명료히 특정

포괄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LEIT의 제정취지에 기한 법적 의의를 돋보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LEIT 제5장을 비롯하여 제6장 (domain nam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protection of privacy rights), 제9장(role of the government and role of the public) 등에 의해 보충된다.

6)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과 목적

LEIT는 제2장에서 동 법 적용에 따른 일반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LEIT의 독립적이고도 배타적인 보유규정임과 동시에 동 법 전반에 걸친 선언규정으로서의 지위를 표창한다.

예컨대 LEIT 제3조에서는 정보기술과 전자거래에 관한 관습(electronic transaction usage)은 기술중립성(technology neutrality)에 기하여 특정 기술을 선택할 자유와 법적 확실성, 상호 이익, 분별성 및 신의칙의 담보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LEIT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동 법 전반에 적용되고 있는, 이를테면 소위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으로서 기능한다. 당해 규정의 법적 함의는 생략적으로 LEIT가 국제(상)거래에까지 그 지평을 확장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당해 의미를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해 개별 일반원칙으로서의 상세는 이하 하계각주와 같다.***

*** LEIT, Elucidation of Art. 3 ; ① “principle of legal certainty means a legal foundation on which information technology and electronic transaction usage as well as anything that supports its application shall be legally recognized inside and outside the court.”, ② “principle of benefit means a principle that information technology and

* UNCITRAL, 「UN Publication Sales No. : E99.V4」 (ISBN92-1-133607-4), p.3, ****.

** LEIT, Art. 1, (21) ; “person means an individual, whether an Indonesian citizen, foreign citizen, or legal entity.

7) 전자문서의 송수신시기

LEIT상 전자문서의 송수신시기는 제8조에
서 일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일
응 ‘도달주의’ 를 기본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다.

동 규정은 여타 법규범에 견줄 경우 별단
의 차이점은 발견할 수 없으나, 다만 유의하
여야 할 사항은 LEIT는 송신시기(time of
sending)와 수신시기(time of receipt)를 별
도로 구분하여 이를 각각 수신자가 전자적
시스템에서 표시 및 이용가능 할 수 있는 상
태에 입력된(entered) 때 및 그 지배하에 입
력된 때로 규정하고 있다.

생각건대 당해 규정은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 및 전자인증(electronic certificate)
규정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규정으로 자격 있는
당사자 및 신뢰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선택

electronic transaction usage shall be
attempted to support the process of using
information in order to enable improvement
of public welfare.”, ③ “principle of
prudence means a foundation on which the
parties concerned must address themselves
to any aspect with potential for causing
damage to both himself/herself and other
party in the usage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electronic transactions.”, ④
“principle of good faith means a
principle that parties to an electronic
transaction shall not aim at knowingly,
without authority or unlawfully causing
damage to other parties without the other
parties’ knowledge.”, ⑤ “principle of
freedom to choose technology or technology
neutrality means a principle that the usage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electronic
transactions shall not focus on the use of
certain technology in order to follow the
development of future technology.”

내지 사용에 관한 수신인의 법적 책임을 가일층
부가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당해 순기능적 법적
실익을 부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8) 전자문서의 문서성(documentation)

법리상 전자문서가 전자계약의 수단으로써
유효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전통적 종이문
서에 상당하는 동일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어
야 하는데, 이를 위한 충족요건은 첫째 전자

* LEIT, Art. 8 ; “(1) unless agreed
otherwise, time of sending of electronic
information and/or electronic records shall
be determined at the time the electronic
information and/or electronic records have
been sent to the proper address by the
senders/originators to electronic systems
the recipients/addressees designate or use,
and have entered electronic systems outside
the control of the senders/ originators.” ,
“(2) unless agreed other- wise, the time
of receipt of electronic information and/or
electronic records shall be determined at
the time the electronic information and/or
electronic records enter electronic systems
under the control of the authorized
recipients/addressees.” , “(3) where
recipients/addressees have design-
ated certain electronic systems to receive
electronic information, reception shall occur
at the time electronic information and/or
electronic records enter designated
electronic systems.” , “(4) where there are
two or more information systems used in
the sending or reception of electronic
information and/or electronic records, then:
(a) the time of sending shall be the time
when electronic information and/or
electronic records enter a first information
system outside the control of the
senders/originators. (b) the time of receipt
shall be the time when electronic
information and/or electronic records enter
a last information system under the control
of the recipients/ addressees.”

문서에 포함된 기록 또는 내용의 차이가 종이 문서와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 다만 전달수단의 차이로 보아 법적효과에 영향이 없다고 하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 전자문서 관계 당사자가 전자문서에 수용된 정보, 즉 기록내용에 항상 접속할 수 있어야 할 것,** 전자문서가 보존유지관리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 아울러 이상의 전제와 조건은 달리 당사자 간의 특약을 통해서라도 배제될 수 없어야 함이 보장되어야 할 것 등이다.***

이에 대하여 LEIT에서는 제3장에서 명료

* 八尾 晃, 「貿易・金融の國際取引 : 基礎と展開」, 東京經濟情報出版, 2001. p.63.

** MLEC, Art. 6, (1) ; “where the law requires information to be in writing, that requirement is met by a data message if the information contained therein is accessible so as to be usable for subsequent reference.”, UECIC, Art. 9, (2) ; “where the law requires that a communication or a contract should be in writing, or provides consequences for the absence of a writing, that requirement is met by an electronic communication if the information contained therein is accessible so as to be usable for subsequent reference.”

*** MLEC, Art. 5, bis ; “information shall not be denied legal effect, validity or enforceability solely on the grounds that it is not contained in the data message purporting to give rise to such legal effect, but is merely referred to in that data message.”, UECIC, Art. 8 ; (1) “a communication or a contract shall not be denied validity or enforceability on the sole ground that it is in the form of an electronic communication.”, (2) “Nothing in this Convention requires a party to use or accept electronic communications, but a party’s agreement to do so may be inferred from the party’s conduct.”

히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앞선 내용과 다르지 않다. 주요 골자는, 첫째 전자문서(electronic record)가 그것이 전자적 형태로 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는 점(제6조), 둘째 종이문서에 기한 전자문서 문서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제7조), 셋째 전자문서의 증거력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제5조) 등이다.

이상의 각 규정은 ‘전자문서의 법적 허용’ (legal recognition of data messages) 및 문서성(writing)에 따른 MLEC 제5조 내지 제6조, ‘전자적 의사표시의 법적 승인’ (legal recogni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에 따른 UECIC 제8조 제1호, ‘전자기록과 전자서명 및 전자계약 관련 법적 승인’ (legal recognition of electronic records, electronic signature, and electronic contracts)에 관한 UETA 제7조, ‘전자기록 및 진정성에 대한 법적 승인 및 전자적 대리인 이용’ (legal recognition of electronic records and authentication ; use of electronic agent)에 관한 UCITA 제107조,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제1호와 동일한 규정이다.

9) 전자거래 일반규정(general provisions)

LEIT는 전자거래에 관한한 일반규정을 제2장에서 합체하여 명정하고 있는데, 조문구성은 제17조에서 제22조에 해당한다.

우선 LEIT는 전자거래의 적용범위를 공공과 개인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동 법이 민사적상사적 활동을 포괄하고 있다는 사실과 다르지 않다.****

곧 LEIT는 제17조의 축조해설에서 동 법은 공공 및 개인, 기업 등에 정보기술의 관습형성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음과 동시에, 이 경우 정보기술의 관습은 가능한 공공의 이해를 우선하여 효율적인 방법과 책임있는 아울러 유효한 방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이에 전자거래에 있어 신의칙을 명문의 규정으로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전자거래에 임한 계약당사자의 법적 구속력 충족을 담보로 제반 인도네시아 유관 법령과의 법적 조화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당해 전자거래에 있어서의 적용법(applicable law) 및 법정지 내지 중재판정지 선택에 이르기까지 전자거래에 임한 계약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보장하여 동 법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간 특단의 명시적인 합의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반 국제사법(private international law)에 의한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 국제사법적 조화의 관점 및 법적 안정성의 차원에서도 보다 진일보한 법적 시각을 표창하고 있다.*

**** LEIT, Art. 17, (1) ; “provision of electronic transactions may be carried out within a public or private scope.

*LEIT, Art. 18 ; “(1) electronic transactions that are stated in electronic contracts shall bind on parties.”, “(2) parties shall have the power to choose law applicable to international electronic transactions they enter.”, “(3) if parties do not make choice of law in international electronic transactions, the applicable law shall be under the principles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4) parties shall have the powers to determine forums of court, arbitration, or othe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stitutions with jurisdiction to handle disputes that may

한편 전자거래에 관한 LEIT 제20조의 내용은 앞선 전자문서의 송수신시기의 보충규정으로 공히 도달주의의 원칙을 설명한 규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제21조 내지 제22조는 전자적 대리인에 대한 귀속효와 자격요건 내지 법적 책임제한에 관한 내용을 명정하고 있는데, 당해 규정내용의 주된 골자는 신뢰할 수 있는 아울러 제반 법률의 규정에 상충되지 않은 자격요건의 구비를 선결요건으로 두어 당해 전자적 대리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료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반 법규범에 비하여 그 내용이 다르지 않다.

10) 전자계약(electronic contract) 성립요건

LEIT에서는 전자계약(electronic contract)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또한 이에 상당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UECIC를 제외한다 법률의 규정에서는 볼 수 없는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체결의 효과를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조 제17호의 정의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곧 계약체결을 위한 청약(offer) 또는 승낙(acceptance)의 귀속효 내지 법률효과에 대해서는 별단의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arise from international electronic transactions they enter.”, “(5) if parties do not make choice of forum as intended by section (4), the jurisdiction of court, arbitration, or othe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stitution with jurisdiction to handle disputes that may arise from such transactions shall be determined under the principles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이를테면 UECIC에서와 같이 제11조 ‘청약의 유인’ (invitations to make offers), 제12조 ‘계약체결시 자동화된 메시지시스템의 이용’ (use of automated message systems for contract formation), 제13조 ‘계약조건의 이용가능성’ (availability of contract terms)에 대한 명시적인 효력부여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여타 법규범에 견줄 경우 LEIT의 입법적 불비라고 생각된다. 이 같은 논점에 참조할 수 있는 법규범은 위 UECIC 당해 조문을 열거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차례로 청약의 유인의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한 주문신청을 위하여 상호작용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한 제안을 포함하여,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특정 당사자에 대한 제안이 아니라 그 정보시스템 사용 당사자들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자적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제안은 그 제안을 승낙에 기속시키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히 표시되지 않았다면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는 것,^{*} 계약체결시 자동화된 메시지시스템(또는 전자적 대리인) 이용의 경우 당해 시스템과 자연인의 상호작용 또는 자동화된 메시지시스템(또는 전자적 대리인) 간의 상

호작용으로 인하여 성립된 계약은 자연인이 그 시스템에 의한 각 단계나 성립될 계약에 대하여 검토하거나 간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 및 집행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는 것,^{**} 계약조건의 이용가능성의 경우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전자적 의사표시의 교환을 통하여 계약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상하는 당사자에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특정한 방식의 계약조건이 포함된 전자적 의사표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또는 위와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하지 못한 데에 따른 당사자의 법적 책임을 감면하지 아니한다는 것^{***} 등이다.

* UECIC, Art. 11 ; “a proposal to conclude a contract made through one or more electronic communications which is not addressed to one or more specific parties, but is generally sal ssible to parties making use of information systems, including proposals that make use of interactive applications for the placement of orders through such information systems, iormatbe considered aoran h such infrmation systems, unlesorit clearly h dicates the inten infrof the party making the proposal to be bound ifrcao infrmal ttance.”

** UECIC, Art. 12 ; “a contract formed by the interaction of an automated message system and a natural person, or by the interaction of automated message systems, shall not be denied validity or enforceability on the sole ground that no natural person reviewed or intervened in each of the individual actions carried out by the automated message systems or the resulting contract.”

*** UECIC, Art. 13 ; “nothing in this Convention affects the application of any rule of law that may require a party that negotiates some or all of the terms of a contract through the exchang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to make available to the other party those electronic communications which contain the contractual terms in a particular manner, or relieves a party from the legal consequences of its failure to do so.”

IV. 시사점 및 결론

1. LEIT의 입법적 시사점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인도네시아 LEIT의 입법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입법적 우위에 기하여 LEIT는, ① 상대적으로 늦은 입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나 정의된 제반 용어의 시의성이 매우 포괄적이고도 신축적이라는 점, ② 전자적 시스템에 대한 확장가능성 내지 적용범위 및 포괄대상을 여타 법규범에 비하여 일응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점, ③ 전자정보거래에 관련한 송수신 범위를 통상적으로 네트워크 또는 정보처리시스템 자체 및 상호 간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이를 클러스터 및/또는 클러스터 간으로 확장하여 현재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적 안정성 내지 시의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 ④ LEIT는 법적 기능성과 확장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타 유관 법규범에 비할 경우 개별 용어에 대한 정의내용을 매우 상세하고도 보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⑤ 전자계약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표창하여 자격있는 계약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담보하고 이에 상당한 법적 구속력의 행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 ⑥ LEIT만의 독립적이고도 배타적인 규정으로서 정보기술, 전자시스템의 일반원칙, 전자적 시스템망, 컴퓨터, 접속코드, 전자계약 등을 정의하고 있다는 점, ⑦ 전자적 대리인의 적용에 관하여 전자인증 및 서명과 관련 전자인증 서비스제공자, 전자적 시스템 네트워크, 전자계약 등의 유관조항과 상호 보완적 규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점, ⑧ 전자거래의 적용범위를 민사상사적 활동에까지 그 지평을 확대하여 그 적용대상을 포괄하고 있음에 따라 제정취지에 기한 법적 의의를 돋보이고 있다는 점, ⑨ 전자거래에 임한 계약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음과 동시에 국제사법적 조화의 관점 및 법적 안정성의 차원에서도 보다 진일보한 법적 시각을 표창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입법적 열위에 기하여 LEIT는 ① 법리적 구성체계가 매우 포괄적이고도 신축적임에 반하여, 동 법의 적용상 하위법령 및/또는 유관 법령의 제·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점, ②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에 관련한 규정내용을 별단의 법률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이를 합체하여 다루고 있어 동 법의 적용상 상당한 혼선과 장애가 예견된다는 점, ③ 이에 더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지적재산권 그리고 도메인 네임 등에 대한 규정내용 또한 포괄하여 동 법에서 아우르고 있다는 점, ④ 전자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곧 계약체결을 위한 청약 또는 승낙의 귀속효 내지 법률효과에 대해서 별단의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이다.

2. 우리 입법에의 함의

LEIT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에 대한 법적 시사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전자거래와 전자상거래를 명료히 구분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점, ② 동 법은 전자적 대리인 또는 자동화된 메시지시스템에 대한 별단의 규정없이 다만 이를 정보처리시스템 범위 내에 합체하여 규정해 두고 있다는 점, ③ 전자거래기본

법은 전자문서의 등기능성을 공히 보장하고는 있으나, 타 법률과 관계에서 전자문서의 형식요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당해 인증신청에 있어 일정한 제한요건을 부가하고 있다는 점, ④ 동 법은 국제적으로 널리 수용될 수 있는 법적 조화의 관점에서 전자문서의 등기능성에 대한 추보규정과 형식요건에 있어서의 제한요건이 미비하다는 점, ⑤ 자동화된 메시지시스템과 정보처리시스템의 효과에 관하여 동 법에서의 내용은 전자적 장치와 체계라고 하는 명료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⑥ 동 법은 작성자 또는 작성자의 대리인, 송신자의 정의규정, 자동화된 메시지시스템에 대한 별단의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까닭에, 당해 전자문서에 기한 기속효를 규정체계 내에 수용하고 있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심종석,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관한 UN 협약의 평가와 실무적용상 유의점에 관한 고찰,” e-비즈니스연구, 제9권, 제4호, 국제e-비즈니스학회, 2008, pp. 241-265.
- 심종석, “국제상거래에 있어 전자문서 인증시스템에 관한 법적 고찰,” 경영법률, 제14집,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4, pp. 311-348.
- 심종석 외, 전자상거래 법률과 제도, 청림출판, 2001.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자상거래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분야별 정책연구, 2000.
- KEIT, “주목받고 있는 인도네시아 최신 경제사정”, 아시아·해외산업경제, 2009.

- 八尾 晃, 貿易・金融の國際取引 : 基礎と展開, 東京經濟情報出版, 2001.
- ‘電子署名及び認証業務に関する法’
- ‘CMI Rules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 (1990)’
- ‘Digital Signature Bill (1997)’
- ‘ICC Supplement to UCP 500 for Electronic Presentation (eUCP)’
- ‘OECD Guidelines for Cryptography Policy (1997)’
- ‘UN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l Contracts(UECIC)’
-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MLEC)’
-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UCITA)’
-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UETA)’
- ‘UN General Assembly A/CN.9/WG.IV/WP95’
- 「UN Publication Sales No. : E99.V4」 (ISBN 92-1- 133607-4)
- 「www.nccusl.org/nccusl/ucita/UCITA_Summary.pdf」
- 「www.uncitral.org/pdf/english/texts/electcom/05-89450_Ebook.pdf」
- 「www.uncitral.org/pdf/english/texts/electcom/06-57452_Ebook.pdf」
- 「www.law.upenn.edu/bll/archives/ulc/ecom/ueta_final」